

## 2. 택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

법률 제6,068호 1999. 12. 2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행하던 분묘 등의 이전명령제도를 폐지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된 택지를 3년내에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거래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당해 택지를 취  
득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